# 수원과학대학교 대학생 권리장전

□ 제정 : 2017. 2.28.

□ 개정 : 2018. 3. 1.

「대학생 권리장전」은 대학생이 대한민국헌법,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과 가치, 자유와 권리 중 대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,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, 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지적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쌓으며, 재학생으로 갖는 대학생의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준수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##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권리장전은 지적공동체인 대학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,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기본원칙) ① 대학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한다.

- ② 대학생은 어떠한 신체적, 언어적,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, 봉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.
- ③ 대학생은 성별, 학력, 국적, 나이, 장애,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.

## 제2장 대학생의 권리

**제3조(자기 결정권)** 대학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, 학업은 건강, 안전, 혼인과 모성의 보호,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.

제4조(학업) ① 대학생에게 보장된 학업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, 학업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

- ② 대학생은 자신의 전공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,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③ 대학생은 학업에 필요한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.
- ④ 대학생의 성적취득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, 평가 결과는 학생이 요구할 경우 면단으로 공유되어야 한다.
- 제5조(저작권) ① 대학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,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.
- ② 대학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, 독창적인 아이 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.
- **제6조(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)** ① 대학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 리가 있다.
-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,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,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다.
- ③ 대학생은 자신의 학업·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.
- **제7조(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)** ① 대학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② 대학생은 대학학생회 자치조직을 구성·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③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진로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.
- 제8조(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) ① 대학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.
- ② 대학생은 학과·전공·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장학금 등 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.
- ③ 모든 학과·전공·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, 일관되며,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.

## 제3장 대학생의 보호

- 제9조(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) 대학생은 자신의 교육에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.
- 제10조(지도교수 또는 소속 반 변경의 권리) ① 지도교수는 지도반 학생에 대한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,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.
- ② 삭제
- ③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소속 반을 변경하고자 희망하고, 학과장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

되는 때에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소속 반을 변경할 수 있다.

- 제11조(해결절차) ① 대학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, 대학은 입증의 의 무를 가지며 대학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.
- 제12조(대학 구성원의 책무) ①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책임을 가진다.
- ② 삭제

**제13조(그 밖의 권리)** 대학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